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포항 상생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및 제출일자 : 포항시장(2026. 10. 06.)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07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6. 10. 16)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 기 결정된 상생공원 부지에 편입된 종교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해당 시설의 종교적 의례 · 교육 · 지역 커뮤니티 기능이 제약 없이 지속 ·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상생공원	근린공원	대잠동 산70-2번지 일원	945,316.7	감) 11,596.0	933,720.7	1964.1.27 (건설부 고시 제79호)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변경)사유
변경	・공원면적 변경 A=945,316.7 →933,720.7㎡ 감)11,596.0㎡	・성심시녀회 : 국가 산업화 사업에 협조하여 이전한 이후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지닌 시설로서, 해당 부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필지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대상이나, 역사성과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공원구역에서 제척함 ・옥천사 : 불교 전통문화와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사찰로서 오랜 기간 존치되어 온 보존 가치가 높은 시설이며, 고가도로와 터널 등으로 인해 공원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더라도 공원조성계획의 공간구조 및 동선 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필지는 토지수용이 가능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공원구역에서 제척함

– 금회 변경 세부내용

구분	제척면적(㎡)	제척시설	비고
성심시녀회	4,951	・대잠동 597번지 외 2필지 ・분묘 33기, 납골묘 35기	공원면적의 0.5%
옥천사	6,645	・득량동 98-4번지 외 6필지 ・대웅보전·제당·삼성각·천불전 일부	공원면적의 0.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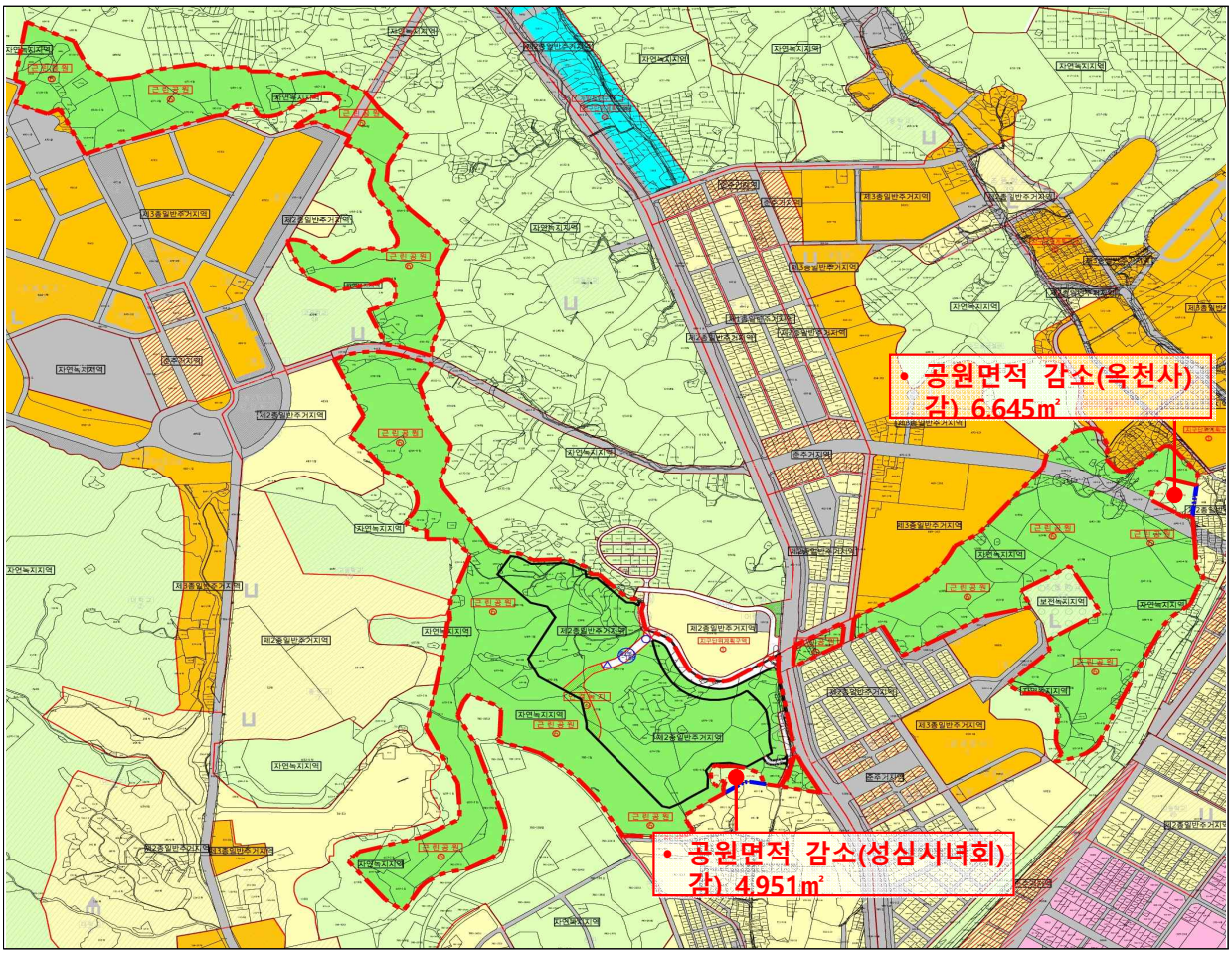

❍ 상생근린공원 공원비율 검토

구 분	부지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상생근린공원	945,316.7	감) 11,596.0	**933,720.7**	**100.00**	-	**100.00**	
녹 지	706,959.7	감) 11,596.0	**695,363.7**	**74.79**	감) 0.32	**74.47**	
공원시설부지면적	68,266.0	-	68,266.0	**7.22**	증) 0.09	**7.31**	법적기준 40%이하 (시설부지면적/공원면적)
비공원시설	170,091.0	-	170,091.0	**17.99**	증) 0.23	**18.22**	법적기준 30%이하 (비공원시설부지면적/공원면적)

❍ 추진경과

- 1964. 01. : 도시계획(양학공원) 최초 결정(건설부고시 제79호)
- 2016. 09. : 포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고
- 2017. 04. :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 04. : 포항 도시관리계획(양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고시 제2020-76호)
- 2020. 06. :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원:양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포항시고시 제2020-131호)
- 2021. 04. :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89호)

  ※ 양학공원 → 상생공원 : 명칭 변경
- 2022. 03.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1,2BL)
- 2025. 09. : 포항 도시관리계획(상생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시고시 제2025-302호)
- 2026. 03. :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원:상생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포항시 고시 제2026-71호)
- 2026. 07.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6. 08. : 주민열람 · 공고
- 2026. 08. : 관련기관(부서) 협의(8개 부서, 1개 기관)

3. 제안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명권)

❍ 본 안건은 상생근린공원 내 편입되어 있는 성심시녀회 및 옥천사 부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상생근린공원 전체 면적 945,316.7㎡에서 성심시녀회 부지 4,951㎡와 옥천사 부지 6,645㎡를 제척하여 공원면적이 933,720.7㎡로 11,596㎡ 감소하게 됨. 이에 따라 녹지, 공원시설부지, 비공원시설부지의 면적 비율도 변경되며, 녹지는 74.79%에서 74.47%로 감소하고, 공원시설부지는 7.22%에서 7.31%, 비공원시설부지는 17.99%에서 18.22%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법령 및 협약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법적기준 : 공원시설부지 40% 이하, 협약서 : 비공원시설부지는 18.3% 이하)

❍ 종합검토 결과,

성심시녀회 및 옥천사 부지는 각각 종교적·역사적 의미와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인 만큼, 해당 시설의 보존과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취지는 인정됨.

❍ 다만 이번 변경으로 상생근린공원의 전체 면적이 감소하며 공원구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만큼, 제척 이후에도 공원조성계획의 공간구조와 주요 동선체계, 녹지체계 및 공원시설의 배치와 기능이 당초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각 계획 간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원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6. 토론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의견서 별첨)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　　견　　서

❍ 성심시녀회 및 옥천사 부지는 각각 종교적·역사적 의미와 기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인 만큼, 해당 시설의 보존과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취지는 인정됨.

❍ 다만 이번 변경으로 상생근린공원의 전체 면적이 감소하며 공원구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만큼, 제척 이후에도 공원조성계획의 공간구조와 주요 동선체계, 녹지체계 및 공원시설의 배치와 기능이 당초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각 계획 간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원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6년　10월　　일

포　항　시　의　회